

Deutschland ist...

Gleichberechtigung

독일은... 양성평등



1948년 세계 인권선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2000년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이상 모두 양성평등의 원칙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shutterstock





양성평등은 기본권

독일에서 양성평등은 기본권에 속한다. 독일의 기본법 제3조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외교정책과 개발도상국 지원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동등한 의무, 동등한 기회, 동등한 힘’을 기본 원칙 중의 하나로 지향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독일에서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다. 이에 독일은 2016년 상장기업에 대해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최소 30%로 정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여성 공무원 할당제도 도입되었으며, 전체 정부 부처 및 기관은 양성평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



www.seoul.diplo.de 
 GermanEmbassySeoul 
 GermanyinKorea 
 germanyinkorea 



일·가정 양립

독일 연방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특히 매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부는 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업과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8개월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수당 금액은 본인의 기존 소득을 토대로 정해지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 덕분에 독일 여성들은 시간제 근무를 하는 형태로 출산 후 비교적 일찍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의 수도 2007년 15%에서 2017년 34%로 증가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보육 인프라 구축이다. 독일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권리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

양성평등을 위한 국제무대에서의 독일의 노력

독일은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여성과 평화와 안보’라는 어젠다를 통해 갈등 해결에 여성을 적극 동참시키는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성폭력 예방과 퇴치에 기여하는 유엔 결의안 2467호도 제출했다. 또한 독일은 유엔여성기구(UN Women) 회원국으로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여성들의 힘을 믿는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African Women Leaders Network)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일은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방글라데시 여성 교육, 아프가니스탄 법치주의 확립 등을 장려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학생을 위한 학교 위생시설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직접 주최 혹은 참가하는 행사에서 여성 발표자, 참가자 및 전문가 비율이 최소 30%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